

FTA 무역리포트 TRADE REPORT

November 2022 Vol. 04 (통권 40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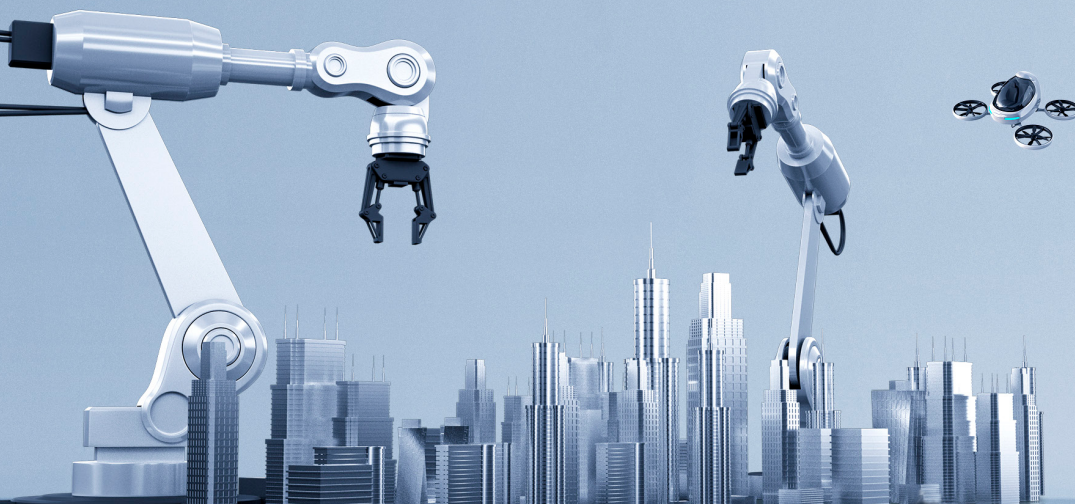
드론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의 활용

최대규 신한 관세법인 이사(관세사 자격)

드론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의 활용



최대규
신한 관세법인 이사
(관세사 자격)



1 시작하며

인터넷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드론’을 검색하면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기사를 접하게 된다. 군사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기사, 물품이나 사람의 운송에 사용되었다는 기사, 취미용으로 사용된다는 기사 등등을 보게 되면, 드론의 기술은 앞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어디까지 사용될지 생각해보게 된다.

드론은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 비행 조정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로, 크기나 무게, 추진 방법에 따라 군사용, 운송용, 취미용 뿐 아니라 재난·방재, 농업·임업 지원, 순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물품수송	산림 보호 및 감시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및 순찰
통신망 활용	해양 관리	농업 지원	영상 촬영

자료:국토부(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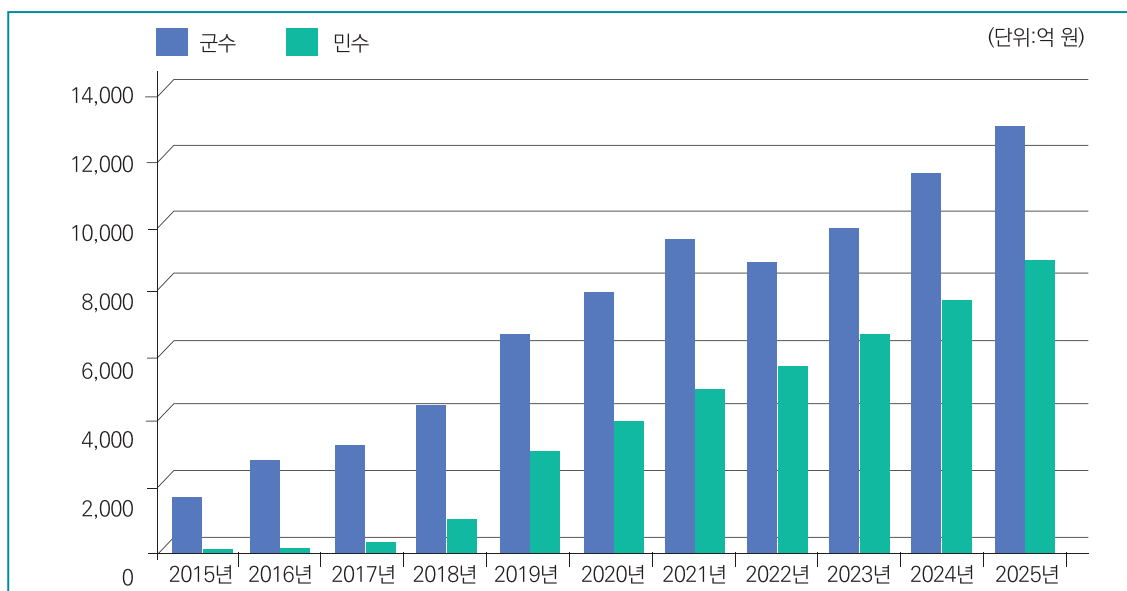
② 드론의 품목분류

1. 용도에 따른 드론의 품목분류

드론의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군사용 드론부터, 촬영용 드론, 배달용 드론, 농업용 드론, 탐사용 드론, 인명구조용 드론 등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드론의 종류일텐데, 2022년 HS에서는 제8806호를 신설하여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무인기를 이 호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다만, 완구용의 드론은 완구류가 분류되는 제9503호에 분류된다.

2022년 이전의 HS에서 드론은 기능과 용도에 따라 각기 달리 분류하였다. 놀이·유희용으로 제작된 것은 완구류로 제9503호에 분류되며, 운반 목적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항공기로 분류되는 제8802호에 분류하였다. 또한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하여 촬영 목적으로 하는 드론은 카메라가 분류되는 제8525.80에 분류하였다.

[국내 무인기 시장 전망]



출처: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2018년 중국 업체가 생산한 항공촬영용 드론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 HS 위원회에서는 ‘카메라’로 판단한 바가 있다. 즉, ‘카메라가 달린 헬리콥터’로 보아 제8802호에 분류할 것인지, ‘날개가 달려 비행할 수 있는 카메라’로 보아 제8525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WCO HS 위원회는 이 드론은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촬영 및 전송에 실용적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보아 카메라로 판단한 바가 있다.

[중국업체가 생산한 드론 모델 사진]



2. HS 2022 개정으로 드론 품목분류 개정

HS 2022 개정 이전에는 드론을 용도와 기능에 따라 각각 달리 분류하여야 했으나, HS 2022 개정을 통해 드론을 용도에 관계없이 하나의 호에 통합할 수 있도록 제8806호를 신설하였고,

기존 항공기 등의 부분품을 분류하는 제8803호를 삭제하고, 제8807호를 신설하여 제88류의 항공기 부분품을 이 호에 분류토록 하였다.

호해설에 따르면 제8806호에는 기내에 조종사 없이 비행하도록 설계된 무인기(unmanned aircraft)가 분류되며, 비행 중 언제든지 조종사가 다른 장소에서 원격으로 조종비행이 가능하거나 조종사의 관여 없이 비행이 가능 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무인기는 화물을 운반하거나, 영구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하거나, 또는 여러 실용기능(예: 화물이나 승객의 수송, 항공 촬영, 농업용 · 과학용 작업, 조난자 구조, 소방용, 감시용,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



[제8806호 품목분류]

HS			품 명
8806			무인기
8806	10	0000	승객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8806			기타(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8806	21	0000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8806	22	0000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	23	0000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	24	0000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	29	0000	기타
8806			기타
8806	91	0000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8806	92	0000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	93	0000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	94	0000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	99	0000	기타

기존 용도에 따라서 분류되었던 드론의 품목 분류가 HS 2022부터는 8806호에 통합하여 분류토록 하였으나, 전적으로 레크리에이션 목적이나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행 완구나 모델로서, 실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은 제9503호의 완구류로 분류하여야

한다. 9503호에 분류되는 드론의 경우 저중량, 고도제한, 비행 가능 거리나 시간, 최대 속도, 자율비행 기능이 없는 점, 짐·화물 수송 능력이 없는 점 등으로 8806호에 분류하는 드론과 구별된다.



[드론의 품목분류]

용도	HS 2022 개정 전	HS 2022 개정 후
운반 목적	제8802호	제8806호
촬영 목적	제8525호	
놀이·유희 목적	제9603호	제9503호

3. 드론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볼 때에는, 각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기준연도를 확인해야 한다. 드론이 분류되는 8806호는 개정을 통해 신설된 HS CODE로서 관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HS

연계표를 확인하여 각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기준연도에 따른 HS 코드를 기준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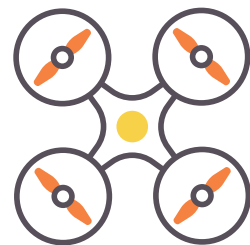
[FTA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기준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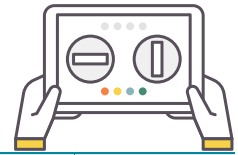
기준 연도	협정
2007	인도, EU, 페루, 터키, 뉴질랜드, 영국
2012	칠레, 싱가포르, EFTA,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중국, 중미, RCEP
2017	아세안, 베트남

[제8806.21호의 HS 2017, 2012, 2007 연계표]

HS 2002	HS 2017	HS 2012	HS 2007	품명
880621	852580	852580	852580	텔레비전 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 비디오카메라레코더
	880211	880211	880211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이하인 헬리콥터
	880220	880220	880220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헬리콥터

제8806.21호에 분류하는 카메라가 장착된 항공촬영용 드론(최대이륙중량 250그램 이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검토한다.





[제8806.21호의 원산지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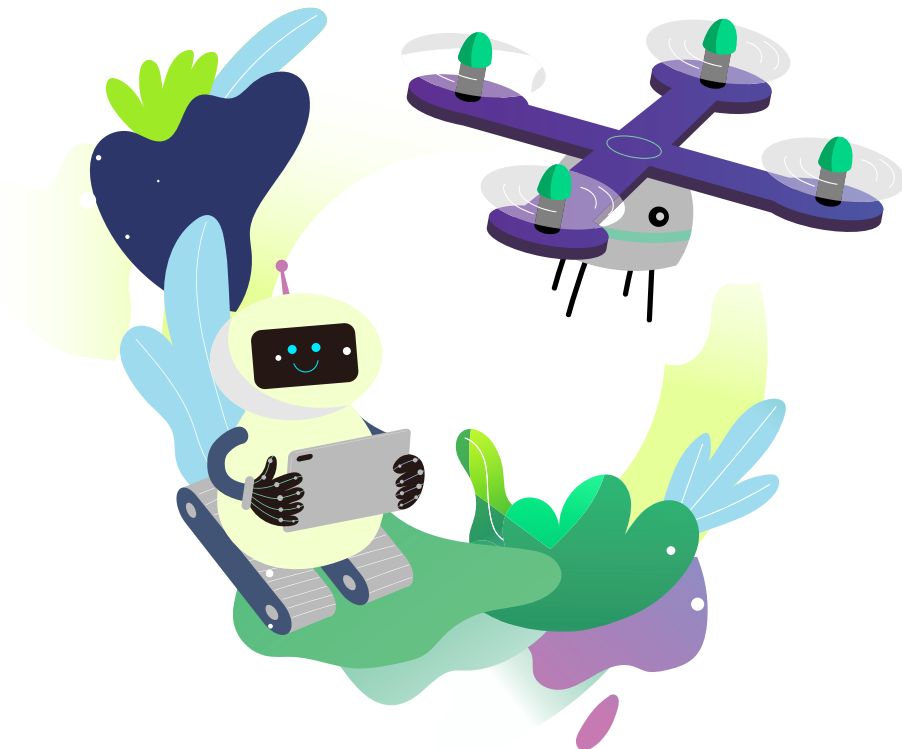
HS 2022	협정	기준연도	기준연도 HS 코드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880621	칠레	2012	852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 한다.	CTH and BU 30% or BD 45%
	싱가포르	2012	8525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텔레비전 카메라: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2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1. CTH and BD 50% 2. CTH
	EFTA	2012	8525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1. CTH 2. MC 50%
	아세안	2017	8525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가치가 발생한 것	1. CTH 2. RVC 40%
	인도	2007	852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 한다.	CTSH and RVC 35%
	EU	2007	85258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MC 50%
	페루	2007	8525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	1. CTH 2. BU 35% or BD 45%
	미국	2012	852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튀르키예	2007	852580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MC 50%

HS 2022	협정	기준연도	기준연도 HS 코드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880621	호주	2012	8525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 CTH 2. RVC 40%
	중국	2012	85258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1. CTH 2. RVC 40%
	뉴질랜드	2007	8525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 CTH 2. BU 30% or BD 40%
	베트남	2017	85258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1. CTH 2. RVC 40%
	콜롬비아	2012	8525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 CTH 2. BU 30% or BD 40%
	중미	2012	8525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만, 캄코더(정치화상의 것을 포함한다)의 전체 조립과 키트나 완전분해물품(CKD)에서 게임으로의 전체 조립을 포함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 CTH 2. BD 40%
	영국	2007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MC 50%
	RCEP	20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 이상일 것	1. CTH 2. RVC 40%

3 맺음말

드론은 이전에는 제9503호에 분류되고, 운반 목적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항공기로 분류되는 제8802호에 분류되도록 하였다. 2022년 HS 개정에서는 제8806호를 신설하고 용도에 상관없이 모든 무인기를 이호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중 드론(완구용)은 완구류가 분류되는 제9503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하였다.

드론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마다 CTH나 RVC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인도의 경우 CTH+RVC의 조합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업체에서 맞는 기준을 선택하여 FTA를 활용하면 된다. 덧붙여 드론의 활용도가 좀 더 높아져서 우리나라에서 드론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드론 수출 역시 증가하기를 기대한다.





FTA FTA 무역리포트 TRADE REPORT

November 2022 Vol. 04 (통권 40호)